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

학술지 운영 규정

제1장 학술지 발행

**제1조 학술지명**

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라고 함)의 학술지는 ‘사회복지상담연구’로 한다.

**제2조 발행**

학술지는 연간 2회(6월 30일, 12월 30일)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, 경우에 따라 연구논문집을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.

**제3조 학술지 구성**

학술지 논문은 연구논문(기획연구, 자유공모연구 등)으로 구성한다.

제2장 학술지 투고

**제4조 투고 자격**

학술지의 투고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1. 학회에서 요청하는 투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출을 거부 하는 경우

2.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(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)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**제5조 투고 시기**

투고는 연중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, 일정 기간을 공지하여 집중할 수 있다.

**제6조 투고 신청**

투고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의 서식과 같이 작성된 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 또는 논문투고 모집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e-mail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투고를 인정한다.

1. 논문 투고 신청서

2. 연구자 윤리 준수 서약서

3. 저작권 이양 및 활용동의서

4.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

5. 심사료 10만원(게재 확정시, 게재료 별도)

6.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시 사전 공개 양식 <추가 2024. 03. 23>

7. 이해상충보고서(해당 사유시 제출) <추가 2024. 03. 23>

**제7조 원고 형태**

투고하는 논문은 한글(HWP)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함께 제출되는 제6조의 서류는 자유형식으로 한다.

**제8조 게재 판정 기준**

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재·수정 후 게재·수정 후 재심·게재불가로 판정한다.

1. 논문 한 편당 3명의 심사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중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.

2. 심사위원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수정된 논문을 재심하도록 한다.

3.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어 저자에게 수정요청이 된 논문은 안내된 기한 내에 회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할 수 있다.

4. 저자가 제출한 저작권 이양 및 활용 동의서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.

5. 비심사논문(기고논문 등)을 게재할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한다. 단, 제6조 2~4호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.

**제9조 투고 제한 및 게재 취소**

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를 제한하거나 이미 게재판정이 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취소한다.

1. 다른 학술지(연구보고서, 대학논총 포함)에 이미 게재된 논문

2. 제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<개정 2024. 03. 23>

제3장 논문 심사

**제10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치**

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조(연구윤리위반행위 범주)에 명시된 행위를 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.

1. 저자의 투고를 무효화 할 수 있다.

2.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회원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투고자의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.

**제11조 논문의 게재**

투고된 논문은 제8조와 제14조에 따라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, 논문 이외의 게재물은 편집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사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.

**제12조 심사 절차**

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접수 즉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수시로 심사한다.

**제13조 심사위원 위촉 및 배정**

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한다.

1. 배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.

2. 한 편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소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.

**제14조 심사 및 평가**

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심사하여 각각 평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, 심사판정은 게재,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, 게재불가로 구분한다. 이때, 최종판정은 <표.1>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으로 결정되며, 다음 각 호의 최종판정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1. 게재 : <표. 1>에 의한 최종판정이 ‘게재’인 경우,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게재한다. 이때, 저자가 평가에 대한 사소한 보완이나 오탈자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2. 수정 후 게재 : <표. 1>에 의한 최종판정이 ‘수정 후 게재’인 경우,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게재한다, 이때, 저자는 논문수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제출하고,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
3. 수정 후 재심 : <표. 1>에 의한 최종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인 경우,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, 재심사는 제15조에 따라 저리한다.

4. 게재불가 : <표. 1>에 의한 최종판정이 ‘게재불가’인 경우,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명기하여 통보한다.

 **<표. 1>심사위원 판정별 최종판정 기준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심사위원 1** | **심사위원 2** | **심사위원 3** | **최종 판정** |
| 게재 | 게재 | 게재 | **게재** |
| 게재 | 게재 | 수정 후 게재 |
| 게재 | 게재 | 수정 후 재심 |
| 게재 | 게재 | 게재불가 |
|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**수정 후 게재** |
|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
|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게재불가 |
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
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
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게재 | 게재불가 |
|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**수정 후 재심** |
|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불가 |
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
| 수정 후 게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불가 |
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
| 수정 후 재심 | 수정 후 재심 | 게재불가 |
| 게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**게재불가** |
| 수정 후 게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| 수정 후 재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
**제15조 재심 절차**

14조3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다.

1. 해당 논문의 1심을 맡았던 원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맡아야 하며, 부득이하게 재심을 하지 못할 경우 원심사위원은 사유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.

2.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만 재심사하도록 한다.

3. 재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‘게재’, ‘수정게재’, ‘게재불가’로만 판정한다.

4. 그 외의 절차는 제14조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16조 심사 기준**

투고된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심사평가서에서 각 점수의 합을 구해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.

1. 연구주제의 적합성,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

2.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

3. 연구방법의 적절성, 최근 연구동향 반영도

4. 연구 논리의 타당성 및 체계성

5. 연구 결과의 학문적, 사회적 기여도

6. 투고 요령(원고작성요령)의 준수성

7. 영문 및 국문 초록의 적합성

8. 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.

**제17조 심사과정 보안**

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의 내용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 학술지 게재 순서**

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투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,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9조 재재심 요청(이의제기)**

저자가 논문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재심을 수행한다.

1. 제4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진행 시, 심사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.

2. 제4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‘게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로만 한다.

3. 재재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4. ‘게재’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저자에게 통보 후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.

**제20조 심사위원 준수사항**

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저자와 심사위원 간 존재할 수 있는 입장 또는 견해의 차이는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.

2.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
3.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자에 대한 학문적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.

**제21조 기타**

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
제4장 부 칙

**제1조 시행**

제 정 2015년 1월 1일

일부개정 2016년 8월 4일

 2017년 10월 1일

 2019년 1월 3일

 2022년 4월 14일

 2024년 3월 23일